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75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 박성준·김문수·허 영

박용갑ㆍ허종식ㆍ정을호

박상혁 • 한민수 • 백혜련

윤준병 • 노종면 • 이훈기

윤종군 • 박희승 • 전현희

신영대 • 박홍배 • 박홍근

염태영•박 정•문진석

정성호 · 김영진 의원

(23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등의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 등에 대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하여 30%의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국민의 도서구입, 공연 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욕구는 늘어난 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기준인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같은 호 다목1)·2),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7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 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②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u>7천만원</u> 을 초과하는 경	<u>1억원</u>
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	
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	
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4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u>7천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전
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
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
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
세연도의 총급여액이 <u>7천만원</u>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
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
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
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 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u>7천만원</u>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이하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 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1억원
	<u>1</u> 억원
	<u> </u>
5.	
	<u>1억원</u>
6.	

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가. (생략)

-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u>7천만</u>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 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 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 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 분의 30
-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 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 액
 -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u>7천만원</u>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 등사용분 + 문화체육사 용분) × 100분의 30 +

 가. (현행과 같음) 나
<u>1억원</u>
- 다
1)
<u>1억원</u>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 드사용분 - 직불카드등 사용분 - 문화체육사용 분) × 100분의 40
-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u>7천만원을</u> 초과 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 분 × 100분의 15 + 직불 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 카드등사용분) × 100분 의 40

7. (생략)

- ③ ~ ⑨ (생 략)
- ①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 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 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u>7천</u>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 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 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2)
2)
<u>1</u> 억원
7.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10
1억원-
<u>1 – 1 – 1 – 1 – 1 – 1 – 1 – 1 – 1 – 1 –</u>
·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
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u>7천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
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2. (생 략)

1
1억원
2. (현행과 같음)